

선수등록규정 개정

현 행	개 정 내 용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상 생략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 장 외국인선수등록 자격 및 대회참가</p> <p>제14조 외국인 선수등록 자격 ① 실업팀 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소속회사에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사원으로 등록된 자 ② 대학팀 소속으로 등록할 경우는 소속대학의 학적에 등록된 자 ③ 본 연맹에 외국인선수로 등록하려는 자는 소속국가연맹 및 본 연맹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5조 외국인선수 대회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다음과 같이 참가할 수 있으나 시도 대항대회는 참가할 수 없다. ① 트랙, 필드 등록된 소속으로는 종합선수권 대회 1회에 한하여 참가가 가능하며, 그 외는 번외로 참가할 수 있다. ② 마라톤 등록된 소속으로는 국내마라톤 대회 1회와 국내개최 국제마라톤 대회 1회에 한하여 참가가 가능하며, 그 외 국내마라톤대회는 번외로 참가할 수 있으며, 국내개최 국제마라톤대회는 소속국가 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. 단, 외국인선수의 국내대회 번외 참가 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당분간 소속국가 명으로 참가토록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상 생략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 장 외국인선수등록 자격 및 대회참가</p> <p>제14조 외국인 선수등록 자격 ① 실업팀 소속으로의 선수등록은 소속회사에서 일정액의 보수 (계약서 및 소득증명서)를 받는 사원으로 등록된 자 ② 대학팀은 소속대학의 학적에 등록된 자 ③ 각소속의 외국인선수는 2명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. ④ 외국인선수로 등록된 자는 국가대표 마라톤선수 합동훈련에 본 연맹에서 요청시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 외국인선수 대회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다음과 같이 참가할 수 있으나 시도 대항 및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. ① 트랙/필드경기대회 등록된 소속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 단, 트랙경기 중 100m~400m까지의 결승경기에는 3명에 한하여 진출할 수 있으며, 필드경기 또한 3명까지 진출할 수 있다. ② 마라톤 등록된 소속으로 전반기 1회, 하반기 1회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, 그 외는 소속국가 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 외국인선수 대회참가에 따른 시상 외국인선수로 등록된 자는 제15조에 해당되는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하여도 국내소속으로 시상할 수 없다. 단,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국내소속으로 시상이 가능하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구수정 및 조항신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구수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항 신설</p>